

##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전·후 비교표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작성기준일: 2019년 9월 30일	작성기준일: 2020년 9월 30일
투자설명서 목차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3. (생략) (추가) (추가) (추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4. (생략) (추가) (추가) (추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3. (현행과동일)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4. (현행과동일)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19.9.30 기준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감안하여 3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2019.9.30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19.9.30 기준 운용전문인력: 2019.9.30 기준	작성기준일: 2020.9.30 기준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감안하여 2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비용: 동종유형총보수(2020.9.30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2020.9.30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0.9.30 기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전문인력: 2019.9.30 기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2019.09.30 기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2020.10.30 -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3 등급->2 등급)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 2020.9.30 기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 2020.09.30 기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13.41%로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위험등급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므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분류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2019.9.30 기준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19.03%로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위험등급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므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분류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총보수: 2020.9.30 기준

<p>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직전 회계연도: 2018.10.01 ~ 2019.9.30]</p>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과세 (추가)</p> <p>(1)~(3) (생략)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납입요건 :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추가) (추가) (추가)</p>	<p>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직전 회계연도: 2019.10.01 ~ 2020.9.30]</p>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과세 다음의 투자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1)~(3) (현행과 동일)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납입요건 :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p> <p>세액공제 : -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종합소득 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p>
---	---

	<p>(5)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p>	<p>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이내 세액공제 12% (5)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p>
--	--	---

		<p>계액이 2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li> <li>-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li> <li>-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 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li> </ul> <p>*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p>
제 3 부. 집	1. 재무정보 : 2019.9.30 기준	1. 재무정보 : 2020.9.30 기준

<p>합투자기 구의 재무 및 운용실 적 등에 관한 사항</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2019.9.30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다. 2019.9.30 기준</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2020.9.30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다. 2020.9.30 기준</p>
<p>제 4 부. 집 합투자기 구 관련회 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다.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2019.9.30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생략)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의 단순한 매매 주문업무는 매매주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의 해외계열 사인 호주 시드니 소재 Lazard Asset Management Pacific 이 수행합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 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 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p>	<p>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다. (현행과동일) 라. 운용자산규모: 2020.9.30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동일)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의 단순한 매매 주문업무는 매매주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의 해외계열 사인 호주 시드니 소재 Lazard Asset Management Pacific 이 수행합니다. 업무수행에 따라 수탁회사에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 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업무위탁에 따른 책 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p>
<p>제 5 부.기 타투자자 보호를 위 해 필요한 사항</p>	<p>5. (추가)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p>	<p>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p>